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3년도 계획서

| 결 | 작성 | 검토 | 승인 |
|---|----|----|----|
| 재 | | | |

(주)아즈텍

[목 차]

I. 사업장 개요

II.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III. 산업안전보건 관리 조직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

IV. 산업안전보건 세부 추진 계획

1. 산업재해에 관한 기록 유지
2. 위험성평가 진행 계획
3. 근골격계 질환예방 업무 및 진행 계획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구입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계획
8. MSDS 비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V. 기타 첨부 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 월별 세부 계획
- 산업안전보건 예산 계획

1. 일반현황

1) 사업장 개요

| | | | | | |
|------|-------------------------|---------------|-----|-----|-----|
| 사업장명 | (주)아즈텍 | 대표이사 | 장귀현 | | |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정남면 안녕길 150번길 72 | | | | |
| 전화번호 | 031-376-0743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장귀현 | | |
| 팩스 | 031-376-0745 | 근로자수 | 계 | 관리직 | 생산직 |
| 업종 | 통신관련기계기구제조업 | | 65 | 15 | 50 |

2) 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 년도 | 근로자수 | 재해현황 | | | | |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 비고 |
|-------|------|------|----|----|----|------------|----------------------|----|
| | | 계 | 총돌 | 추락 | 기타 | 재해율 (%) | | |
| 2023년 | 65 | 0 | 0 | 0 | 0 | 0.00 | | |
| 2022년 | 70 | 1 | 0 | 0 | 1 | 1.43 | | |
| 2021년 | 75 | 1 | 0 | 0 | 1 | 1.33 | | |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고용노동부에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였고 그 근거를 보관하는지 여부

3) 재해 세부 내용 (최근 3년간)

| 구분 | 재해형태 | 재해일자 | 비고 |
|----|-----------------|--------------|----|
| 1 | 절단 작업 중 베임 | 21년 01-14 | |
| 2 | 자재이동중 이동대차 발 골절 | 22년 01-05 | |
| | | | |
| | | | |

2.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고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예방 실현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들의 참여 독려와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전 사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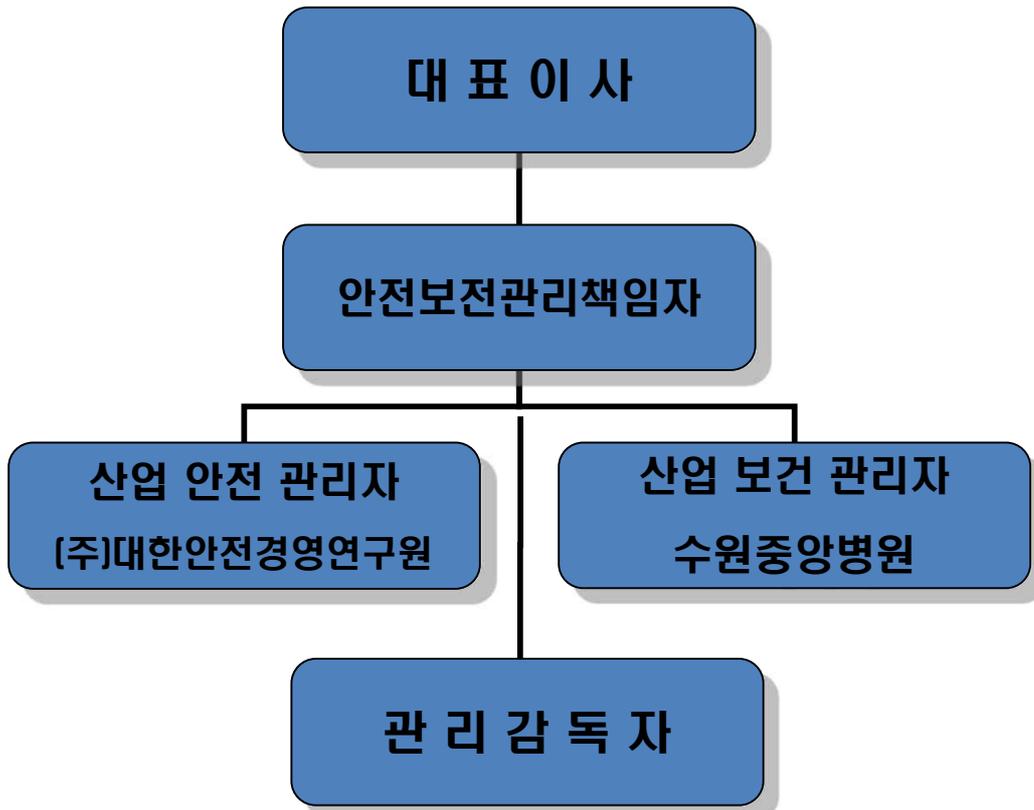
추진 목표

전년 대비 재해감소 100% 달성
(목표 재해율 0% / 재해자 수 0명)

기 본 지 침

-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철저 수행
- 산업안전보건관리 방향의 전환
[현장점검 중심에서 안전시스템 중심으로]
 - 위험성평가 철저 수행
-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수행
 - 관리감독자 직무 철저

3. 산업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업무 관계자 지정 및 운영현황

| 구분 | 성명 | 선임일 | 교육 이수일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장귀현 | 2016-01-01 | 2022년 | 2년/1회 |
| 산업 안전관리자 | (주)대한안전 경영연구원 | 2017-04-01 | - | |
| 산업 보건관리자 | 수원중앙병원 | 2016-01-01 | - | |
| 관리감독자 | 생산팀 | 정민철 | | 매년 |
| | 생산팀 | 김만일 | | " |
| | 관리팀 | 최흥익 | 2022년 | " |
| | 영업팀 | 전상범 | | " |
| | 품질팀 | 이청욱 | 2023년 | " |
| | 개발팀 | 김창용 | 2023년 | " |

3. 산업안전보건 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 ▶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에 인증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 한다.
- ▶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리감독자의 직무

-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⑥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산업재해 예방 및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철저히 실행한다.

(1) 위험성평가 연간계획 [정기조사 / 수시조사]

위험성평가는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발생/레이아웃 변경/신규 설치/ 폐기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

| 구 분 | 업 무 흐 름 도 | 진행일정 | 비 고 |
|-----------|---------------------------|---------|-------|
|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 3월 | |
| | ↓ | | |
| | 평가팀 실시 회의(토론) 개최 | 3월 | 1회 |
| | ↓ | | |
|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평가 사내 근로자 교육 | 3월 - 4월 | 전 근로자 |
| | ↓ | | |
| •위험요인 파악 | 대상공정 분류 및 현장 점검 / 청취조사 | 3월 - 4월 | |
| | ↓ | | |
|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 4월 - 5월 | |
| | ↓ | | |
| •감소대책 수립 | 평가팀 대책 수립 회의 (예산 책정) | 6월 | 1회 |
| | ↓ | | |
| •개선실행 | 개선 결과 이행 | 6월 - 9월 | |
| | ↓ | | |
| •평가 종료 | 개선 결과 보고 | 10월 |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2) 근골격계 질환예방 업무 및 진행 일정

최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매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내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최초 조사일 | 20 년 월 | 설립 후 1년이내 실시 |
| 최근 조사일 | 2021 년 10 월 | 최초 조사 후 매3년 실시 |
| 차기 조사 예정일 | 2023 년 5월~ 8월 | |

(3)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최근 측정일 | 22년 5 월 | |
| 차기 측정일 | 23년 5 월 | |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일반건강 검진 예정일 | 23년 2 월 | 2월완료 |
| 특수건강 검진 예정일 | 23년 2 월 | 2월완료 |

※특수검진 대상물질 : 보건관리자 협의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안전장치 | 변동사항 없음 | |
| 보호구 | 기존 제품 구매 / 제품 변경 |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6) 산업안전표지 부착 및 관리 계획

매월 1회 공정별 산업안전표지 부착 사항 확인 점검 (관리감독자)

| | | | | | |
|---|---|---|--|---|---|
| <h1>1</h1>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동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 |  |  |  |  |  |
|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 | |
| |  |  |  | | |
| <h1>2</h1>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 산화성물질경고 | 폭발성물질경고 | 급성독성물질경고 | 부식성물질경고 |
| |  |  |  |  |  |
| | 방사성물질경고 | 고압전기경고 | 매달린물체경고 | 낙하물경고 | 고온경고 |
| |  |  |  |  |  |
| | 저온경고 | 몸균형상실경고 | 레이저광선경고 | 발암·변이·생식·생식장애·면역·신독성·유전자변형물질경고 | 위험장소경고 |
|  |  |  |  |  | |
| <h1>3</h1> 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 방독마스크착용 | 방진마스크착용 | 보안면착용 | 안전모착용 |
| |  |  |  |  |  |
| | 귀마개착용 | 안전화착용 | 안전장갑착용 | 안전복착용 | |
| |  |  |  |  | |
| <h1>4</h1>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구 |
| |  |  |  |  |  |
|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 | | |
| |  |  | | |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7) 밀폐공간 작업시 예방 대책 계획

최밀폐공간 작업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건강장애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밀폐공간 작업 공정 | 해당없음 |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 대책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 | |
|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실시, 작업공간 내부 환기 | | |
|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피용 기구 등 비치 실시 | | |
| 위험장소 예시 |  |  |

(8) 높은장소 작업시 추락 예방 대책 계획

사다리나, 자동차 상부, 지붕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말한다.
차량 위에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높은장소 작업 공정 | 입출고 |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 대책 : 안전한 사다리 사용, 사다리 안전작업 수칙 준수 | |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위험장소 예시 |  |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9) 안전보건 교육 계획

가. 안전보건 교육 추진 기준

- 교육일정 : 매월 격주 월~목 작업전 (15분) 실시
- 교육방법 : 각 조별 휴게실에서 집체교육, 교육 주제별 교안작성 활용 추진
- 휴업 및 장기 출장 등 사고자 교육기준 :
그 기간 동안의 교육 시간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

나. 안전보건 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 자격 이수한 자
- 기타 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으로 사업주가 인정한자

[안전보건 교육진행 일정]

| 구 분 | 추진 계획 | | | | 비 고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관리감독자 교육 | | → | | | 연간 16시간이상 |
|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 발 생 시 | | | | 8시간 이상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매월 2시간이상 |
| 작업내용 변경 교육 | 발 생 시 | | | | 2시간 이상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발 생 시 | | | | 16시간 이상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계획

가. MSDS제도의 의미

MSDS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나. 화학물질 취급시 준수 사항

- 화학물질 사용 작업장 내 MSDS 비치 및 비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작업장내 소분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주요내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다. 아래의 조건 발생시 MSDS 교육을 실시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작업자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시행규칙 제92조의6 제1항 관련)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MSDS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취급물질 현황]

| 순 번 | 취급 물질 | 취급장소 | 순번 | 취급 물질 | 취급장소 |
|-----|-------|------|----|---------------------------------|--------|
| 1 | 절삭유 | 가공 | 4 | BW CUT EP-926 TECTYL SPIN 10 | 생산(가공) |
| 2 | 세척제 | 세척 | 5 | pcw-620 | 생산(세척) |
| 3 | 연마제 | 샌딩 | 6 | GLAS-BEADS | 생산(샌딩) |

[MSDS 교육진행 일정]

| 구 분 | 추진 계획 | | | | 비 고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MSDS교육 | 발 생 시 | | | | 정기안전 보건교육 시간 활용 하여 진행 |

4. 산업안전보건세부 추진 계획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구.

나. 심의·의결을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 위원 명단]

| 순 번 | 사측명단 | 비 고 | 순번 | 노측명단 | 비 고 |
|-----|-----------|-----|----|--------|-------|
| 1 | 장귀현 대표이사 | 위원장 | 1 | 김창용 대리 | 근로자대표 |
| 2 | 정민철 부장 | 위원 | 2 | 이청욱 과장 | 위원 |
| 3 | 대한안전경영연구원 | | 3 | 최홍익 과장 | 위원 |
| 4 | 수원중앙병원 | | 4 | 김연숙 대리 | 위원 |
| 5 | | | 5 | | |

[위원회 운영 일정]

| 구 분 | 추진 계획 | | | | 비 고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월 | 6월 | 9월 | 12월 | |

안전보건교육 월별 세부 계획

| 교육구분 | 교육시기 | 교육주제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비고 | |
|------------------------|---|---------------------|--------------------|------|------------------------------|-----------|-----|
| 정기안전 교육 | 1월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1월 | 2시간 | 전근로자 | 분기6 시간 | |
| | 2월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2월 | 2시간 | | | |
| | 3월 |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3월 | 2시간 | | | |
| | 4월 | 뇌심혈관질환 예방·절단 수공구 작업 | 4월 | 2시간 | 전근로자 | 분기6 시간 | |
| | 5월 | 산재보험 교육자료 | 5월 | 2시간 | | | |
| | 6월 | | 6월 | 2시간 | | | |
| | 7월 | | 7월 | 2시간 | 전근로자 | 분기6 시간 | |
| | 8월 | | 8월 | 2시간 | | | |
| | 9월 | | 9월 | 2시간 | | | |
| | 10월 | | 10월 | 2시간 | 전근로자 | 분기6 시간 | |
| | 11월 | | 11월 | 2시간 | | | |
| | 12월 | | 12월 | 2시간 | | | |
|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변경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배치전 | 8시간 | 신규입사 자 작업내용 변경자 | | |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 | |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배치전 | | | 2시간 |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특별안전 |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입사 배치 전 및 작업내용 변경자 | 16시간 | 해당하는 작업 | | |

산업안전보건 예산 계획

▣ 예산/ 집행

| 구 분 | 예 산 | 집 행 | 비 고 |
|-------------------------------------|------------|-----|---|
| 1. 회의 및 외부교육 지원비 | ₩200,000 | | 회의다과비, 강사료, 외부교육비 |
| 2. 안전시설비등 | ₩200,000 | | 설비 안전장치 기계 안전덮개, 곡소배기장 치 등 안전장치 기계 보수비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1,000,000 | |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 크, 방독마스크, 응급박스, 구급약품 등 |
| 4.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진단비등 | | |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관리감독자 전문가 과정 | ₩500,000 | | 교재비, 현수막제작비, 안 전홍보비 |
|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1,000,000 | |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
| 7. 안전보건표지 비용 등 | ₩100,000 | | 안전보건표지, 안전포스터 등 |
| 비 고 | | | |